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2 선고 2019가단646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변론 종결 2019. 7. 18

판결 선고 2019. 8. 22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,090,900원 및 그 중 480,000,000원에 대하여 2008.6. 21.부터 2009. 5. 2.까지 연 19%, 2009. 5. 3.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, 2015. 10. 1.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,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영풍

별지